

〈일반논문〉

15세기 강진 무위사의 국가적 위상* - 승정체제의 개혁, 운용과 관련하여 -

손 성 필 **

〈목차〉

- I. 머리말
- II. 15세기 초반 승정체제 소속 사찰의 지정과 해제
 - 1. 1406년 승정체제 개혁과 무위사의 '자복사' 지정
 - 2. 1424년 승정체제 개혁과 '지정 사찰', '일반 사찰'
- III. 15세기 중·후반 승정체제의 지속과 '수륙사' 지정
 - 1. 15세기 수륙사의 지정과 국행 수륙재의 실행
 - 2. 15세기 중·후반 무위사의 중창과 수륙사 지정
- IV. 맺음말

[국문초록]

이 논문에서는 15세기 승정체제 개혁과 운용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15세기 무위사의 국가적 위상, 국가와 사찰의 상호관계에 대해 논해 보았다. 그 논의의 과정에서 1406년과 1424년 승정체제 개혁, 자복사, 수륙사 등에 대한 기존의 이해를 일부 수정·보완하기도 하였다. 주요 논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무위사는 고려초기 이래로 승정체제에 소속된 '지정 사찰'이라는 국가적

* 이 논문은 2022년 12월 3일 강진 무위사 수륙재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글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조선대학교 역사문화학과 조교수

위상을 대체로 유지해 왔으나, 1406년과 1424년의 승정체제 개혁으로 인해 ‘일반 사찰’이 되었다. 이에 무위사는 주지 임명, 사사전 지급 등을 통해 국가가 지원하고 관리하던 사찰에서, 국가의 지원과 관리를 받지 않는 사찰이 되었다. 그 자체적인 경제 기반의 유무나 확보에 따라 유지될 수도, 퇴락할 수도, 망폐할 수도 있는 일반 사찰이 된 것이다.

둘째, 무위사는 1406년 승정체제 개혁에 대한 1407년의 후속 조치에 따라 읍 외의 ‘명산대찰’로서 읍내의 ‘자복사’를 대체하게 되었는데, 이 조치는 1412년 철회되었다. 1406년의 승정체제 개혁은 지방 균읍의 위계를 따른 승정체제의 대대적인 개편이 다소 무리하게 시도됨으로 인해 성공적이지 못했고, 이에 ‘읍내 자복사’의 혁거 여부가 계속 논란이 되었다. 1406년 개혁의 이러한 실패가 사실상 1424년 개혁의 배경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에 1424년의 승정체제 개혁은 주요 ‘명산대찰’에 사사전을 분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셋째, 15세기에 ‘수륙사’는 국가나 왕실이 조종, 곧 선왕·선후들의 명복을 빌기 위해 지정한 사찰이었다. 15세기 후반에 국가나 왕실의 수륙사 지정은 증가하였고, ‘국행 수륙사와 내행 수륙사’의 구분이 모호하게 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무위사는 1476년경의 중창을 계기로 수륙사로 지정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중창도 국가나 왕실의 일정한 지원 하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처럼 15세기 후반 무위사의 수륙사 지정은, 승정체제 운용의 지속 하에 국가나 왕실의 수륙사 지정이 증가한 시기에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러므로 15세기 개별 사찰의 연구는 승정체제, 자복사, 수륙사 등의 국가 제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15세기 승정체제의 연구는 개별 사찰의 구체적인 사례 검토를 통해 보완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 주제어

강진 무위사, 승정체제, 지정 사찰, 일반 사찰, 자복사, 수륙사, 국행 수륙제

I. 머리말

한국에 불교가 전래된 이래 국가와 불교, 승도, 사찰은 다양한 방식으로 상호관계를 형성해 왔다. 특히 고려시대에는 불교, 승도, 사찰이 고려의 국가체제와 긴밀하게 결속되어 있었는데, 이러한 관계는 조선초기의 국가체제 개혁으로 크게 약화되었다.

고려는 僧科를 시행하고 僧職을 임명하였으며 주요 사찰에 住持를 임명하고 寺社田을 지급하였다. 승과 시행, 승직 임명, 주지 임명, 사사전 지급 등을 통해 승도를 보호하고 통제하며 사찰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이러한 국가적인 시스템을 일반적으로 '僧政體制'라고 한다.¹⁾ 조선은 태종대와 세종대에 이 승정체제에 대한 개혁을 단행하였다. 이 개혁은 기존 제도를 계승하면서도 그 규모를 크게 감축하거나 새롭게 재편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개혁으로 형성된 조선의 승정체제는 연산군대에 이르기까지 지속되었다.²⁾

그렇다면 15세기는 승정체제가 크게 개혁된 시기이면서, 새로운 승정체제가 계속 유지된 시기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 시기 승정체제와 관련된 각종 제도와 그 운영에 대해서는 연구가 부진하며,³⁾ 이 시기 승정체제의

1) 고려의 승정체제에 대해서는 한기문, 『高麗寺院의 構造와 機能』, 민족사, 1998; 박윤진, 『高麗時代 王師·國師 研究』, 경인문화사, 2006; 김윤지, 『高麗 僧政 研究』, 고려대 한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22 등 참조.

2) 손성필, 「寺刹의 혁거, 철퇴, 망폐: 조선 태종·세종대 승정체제 개혁에 대한 오해」, 『진단학보』 132, 2019; 손성필, 「조선 태종·세종대 '혁거' 사찰의 존립과 망폐: 1406년과 1424년 승정체제(僧政體制) 개혁의 이해 방향과 관련하여」, 『한국사연구』 186, 2019.

3) 최근에 15세기 승정체제 운용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양혜원, 「15세기 승과(僧科) 연구」, 『한국사상사학』 62, 2019; 김선기, 「15~16세기 조선의 지정 사찰운영과 賦稅」, 『조선시대사학보』 100, 2022.

개혁과 운용이 주요 사찰의 관리와 운영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도 이해가 부족하다. 이 승정체제 소속 사찰로 지정되지 못한 사찰은 ‘撤毀’되었거나 ‘亡廢’했다는 잘못된 이해가 통용되기도 했는데,⁴⁾ 이러한 잘못된 이해는 그간 승정체제 개혁을 불교를 억압한 정책으로만 과장 해석한 데 대한 근거이면서, 과장 해석한 결과이기도 했다.⁵⁾

사실 태종·세종대의 승정체제 개혁으로 ‘지정 해제[革去]’된 사찰은 국가가 더 이상 주지를 임명하지 않고 기존에 지급한 사사전을 환수하였기 때문에, 사찰을 운영하는 데 큰 어려움에 직면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사찰은 국가가 지급한 사사전만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었으므로, 해당 사찰에 사사전 이외의 경제적 기반이 존재하거나 확보됐다면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했다.⁶⁾ 실제로 태종대, 세종대의 승정체제 개혁으로 지정 해제된 사찰의 상당수는 그 이후에도 계속 존속하였다.⁷⁾ 그러므로 15세기의 국가 체제, 사회 현실 등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15세기 승정체제 개혁과 운용이 사찰 운영에 미친 영향, 승정체제와 관련된 각종 제도와 그 운영, 개별 사찰의 운영과 경제적 기반 등에 대해 엄밀한 방법을 통한 구체적인 사례 연구가 축적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康津 無爲寺는 15세기 초반 승정체제 개혁의 후속 조치로 국가가 ‘資福寺’로 지정했다가 해제한 사찰이며, 15세기 후반 ‘水陸社’로 지정된 사

4) 손성필, 「寺刹의 혁거, 철훼, 망폐」, 75~82쪽.

5) 조선시대 불교에 대한 기존의 인식과 새로운 연구 경향에 대해서는 김용태, 「조선시대 불교 연구 100년의 재조명」, 『조선불교사상사: 유교의 시대를 가로지른 불교적 사유의 지평』,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21 참조.

6) 寺社田이 사찰 운영의 公의 경제 기반이라면, 施納田, 施主 등은 私의 경제 기반이라고 할 수 있다. 승정체제에 소속된 사찰은 공적 경제 기반과 사적 경제 기반으로 운영되었으나, 승정체제에 소속되지 않은 사찰은 사적 경제 기반으로만 운영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국가가 주지를 임명하고 사사전을 지급한 사찰을 ‘승정체제 소속 사찰’ 또는 ‘지정 사찰’이라고 부르고, 그렇지 않은 사찰은 ‘일반 사찰’로 부르기로 한다.

7) 손성필, 「조선 태종·세종대 ‘혁거’ 사찰의 존립과 망폐」, 273~290쪽.

실이 확인되는 사찰이기도 하다. 그리고 15세기 중·후반의 사찰 운영에 대한 문자 자료가 다소 확인되는 사찰이기도 하다. 15세기의 관찬 기록, 문자 자료가 전하는 사찰은 드문 편이므로, 무위사는 15세기 승정체제의 개혁과 운용 하에서 국가와 사찰의 관계, 개별 사찰의 운영 등에 대해 비교적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사찰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간 무위사에 대한 연구는 주로 건축사, 미술사적 관점에 따라 이루어져 왔으며,⁸⁾ 무위사의 역사나 국가적 위상에 대한 개별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더구나 15세기 승정체제 개혁과 운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15세기 무위사의 국가적 위상에 대한 기존의 이해는 부정확하거나 불명확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고에서는 15세기 승정체제 개혁과 운용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15세기 무위사의 국가적 위상, 국가와 사찰의 상호관계에 대해 논해 보고자 한다.

8) 문명대, 「無爲寺極樂殿 阿彌陀後佛壁畫試考」, 『미술사학연구』 129·130, 1976; 김동현, 「無爲寺 極樂殿 墨書銘」, 『문화재』 16, 1983; 배종민, 「강진 무위사 극락전과 후불 벽화의 조성배경」, 『고문화』 58, 2001; 장충식·정우택, 「無爲寺壁畫白衣觀音考: 畫記와 墨書偈讚을 중심으로」, 『정도학연구』 4, 2001; 최선일, 「康津 無爲寺 極樂寶殿 阿彌陀三尊壁畫」, 『경주문화연구』 5, 2002; 이경화, 「무위사 극락보전 벽화의 원형과 변모」, 『불교학연구』 15, 2006; 이경화, 「無爲寺 極樂寶殿 白衣觀音」, 『불교미술사학』 5, 2007; 이승희, 「無爲寺 極樂寶殿 白衣觀音圖와 觀音禮懺」, 『동양미술사학』 10, 2009; 김광희, 「무위사 극락보전 아미타여래삼존상 연구」, 『불교미술사학』 18, 2014; 이수예, 「강진 무위사 극락전 단청의 조성연대에 대하여」, 『강좌미술사』 43, 2014; 신광희 「강진 무위사 '아미타여래삼존 벽화'의 화승과 화풍 검토」, 『미술사논단』 52, 2021.

II. 15세기 초반 승정체제 소속 사찰의 지정과 해제

1. 1406년 승정체제 개혁과 무위사의 ‘자복사’ 지정

고려로부터 계승된 조선의 승정체제는 조선초기 약 20여 년간의 논의와 조치를 통해 개혁되었다.⁹⁾ 태종이 1402년(태종 2) 4월에 개혁을 추진하였으나,¹⁰⁾ 8월에 태조의 반대로 시행이 취소되었다.¹¹⁾ 태종이 1405년(태종 5) 11월에 개혁 논의를 다시 시작하여,¹²⁾ 1406년(태종 6) 3월에 개혁을 단행하였으며,¹³⁾ 1407년(태종 7) 12월, 1412년(태조 12) 12월 등에 후속 조치가 이루어졌다.¹⁴⁾ 이후 세종이 1420년(세종 2) 1월, 1424년(세종 6) 2월, 3월 등에 개혁을 다시 논의하여,¹⁵⁾ 1424년 4월에 개혁을 단행하였으며,¹⁶⁾ 그 후속 조치가 1424년 4월과 10월, 1425년(세종 7) 5월 등에 이루어졌다.¹⁷⁾

위와 같은 1406년과 1424년의 개혁, 그 후속 조치로 성립된 태종대와 세종대 승정체제의 주요 기능과 구성을 개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¹⁸⁾

9) 손성필, 「조선 태종·세종대 ‘혁거’ 사찰의 존립과 망폐」, 244쪽.

10) 『太宗實錄』 卷3, 2년 4월 22일.

11) 『太宗實錄』 卷4, 2년 8월 4일.

12) 『太宗實錄』 卷10, 5년 11월 21일.

13) 『太宗實錄』 卷11, 6년 3월 27일.

14) 『太宗實錄』 卷14, 7년 12월 2일; 卷24, 12년 12월 11일.

15) 『世宗實錄』 卷7, 2년 1월 26일; 卷23, 6년 2월 7일; 2월 13일; 3월 13일.

16) 『世宗實錄』 卷24, 6년 4월 5일.

17) 『世宗實錄』 卷24, 6년 4월 28일; 卷26, 6년 10월 25일; 卷28, 7년 5월 12일.

18) 손성필, 「조선 태종·세종대 ‘혁거’ 사찰의 존립과 망폐」, 254~255쪽.

〈표 1〉 태종·세종대 승정체제의 주요 기능과 구성

구분		태 종	세 종
종	數	7	2
	主要 僧職	判事(7)	判事(2), 掌務(2)
승정	機能	僧選, 僧批, 僧錄	僧選, 僧批, 僧錄
	實務 機構	僧錄司	禪宗, 教宗
	住持 薦望	僧錄司 → 吏曹(太宗 16,1416)	吏曹
지정 사찰	定數	242	36
	主要 僧職	住持(242)	住持(36)
	常住僧	(寺社田 2結當 1員)	3,770 (각 사찰별 규정)
	寺社田	11,100餘結(常住僧 1員當 2結)	7,950 (각 사찰별 규정)
	寺奴婢	(常住僧 1員當 1口)	-

위 표에서 보듯 태종·세종대의 승정체제 개혁은 종, 승정, 지정 사찰의 운영 체제를 개편하기 위한 것으로, 종의 수, 승정 기구, 승직의 수, 지정 사찰의 수, 常住僧의 인원, 사사전의 결수 등을 유기적으로 통합하고 감축하여 새롭게 재편하고자 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1406년과 1424년 개혁은 주지 임명, 사사전 지급 등을 통해 사찰을 지원하고 관리하며 승도를 보호하고 통제하는 국가적인 체제, 곧 승정체제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세종대의 개혁으로 성립된 이 조선의 승정체제는 연산군대에 이르기까지 80여 년간 큰 변동 없이 유지되었고, 연산군 말, 중종 초에 폐지되었다가 명종대에 복구하여 약 15년간 운영되기도 하였다.

고려 승정체제의 소속 사찰 수, 사사전 결수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이 없기 때문에, 조선초기 승정체제 개혁의 규모를 정확히 평가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태종대와 세종대의 『실록』 기사를 통해 볼 때, 1406년 개혁으로 기존의 승정체제의 규모가 소속 사찰의 수는 1/2 또는 1/10 수준으로, 사사전의 결수는 1/10 수준으로 감축되었다.¹⁹⁾ 1406년 개혁으로 지정된

사찰이 242개이며, 지급된 사사전이 11,100여 결이었으므로,²⁰⁾ 이를 통해 추산되는 고려 말의 승정체제 소속 사찰은 대략 500개 또는 2,400개, 사사전은 대략 10만 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1406년의 개혁은 고려의 기존 승정체제를 소속 사찰의 수는 1/2 또는 1/10 수준으로, 사사전의 결수는 1/10 수준으로 크게 감축한 개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1406년 3월에 단행된 승정체제 개혁의 주요 내용을 해당 『실록』 기사에 근거하여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²¹⁾

〈표 2-1〉 1406년 3월 승정체제 개혁의 주요 내용 (1)

구분		寺社田	寺奴婢	常養僧
新·舊都 各寺內	禪·教 各 1寺	200結	100口	100員
	其餘 各寺	100結	50口	50員
各道 界首官	禪·教 中 1寺	100結	50口	(50員)
各官	邑內 資福	20結	10口	10員
	邑外 各寺	60結	30口	30員

〈표 2-2〉 1406년 3월 승정체제 개혁의 주요 내용 (2)

연번	종	사찰 定數	비고
1	曹溪宗·摠持宗	70寺	“曹溪宗·摠持宗合留70寺”
2	天台疏字·法事宗	43寺	“天台疏字·法事宗合留43寺”
3	華嚴·道門宗	43寺	“華嚴·道門宗合留合留43寺”
4	慈恩宗	36寺	“慈恩宗留36寺”
5	中道·神印宗	30寺	“中道·神印宗合留30寺”
6	南山宗	10寺	“南山·始興宗各留10寺”
7	始興宗	10寺	

19) 손성필, 「조선 태종·세종대 ‘혁거’ 사찰의 존립과 망폐」, 258~260쪽. 『太宗實錄』 卷 28, 14년 7월 4일, “國家深慮其弊 乃併各宗寺社 亦減其半”. 『世宗實錄』 卷6, 1년 12월 10일, “前既革去寺社田民僅存十一”. 『世宗實錄』 卷64, 16년 4월 11일, “惟我太宗恭定大王 … 革寺社十置其一 減減獲百有其十”.

20) 『世宗實錄』 卷23, 6년 2월 7일, “是則中外寺社 分屬一萬一千一百餘結之良田 委之何地”.

위 <표 2-1>은 지정 사찰의 사사전 결수, 사노비 구수, 상주승 인원 등을 규정한 것이며, <표 2-2>는 혁거하지 않고 승정체제 소속으로 계속 두는 지정 사찰의 수를 각 종별로 제시한 것이다. 우선 <표 2-1>을 살펴보면, 균읍의 위계, 소속 종, 소재지 등의 기준에 따라 지정 사찰의 사사전 결수, 사노비 구수, 상주승 인원 등을 체계적으로 규정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균읍의 위계, 소속 종, 소재지 등의 기준에 따라 사사전 결수, 사노비 구수, 상주승 인원 등에 차등을 두었고, 기본적으로 상주승 1員 당 사사전 2結, 사노비 1口가 지급되었다. 이처럼 국가는 1406년의 개혁을 통해 사사전과 사노비를 지급하는 기본 원칙을 체계적으로 규정하였고, 특히 都邑-界首官-郡邑이라는 지방 통치체제의 위계에 따라 지정 사찰을 편제하여 사사전과 사노비를 체계적으로 지급하고자 하였다.²¹⁾

다음으로 <표 2-2>를 살펴보면, 종별로 소속 사찰의 定數를 규정하였는데, 모두 242개 사찰을 지정 해제하지 않고 승정체제 소속 사찰로 계속 두었다. 위 <표 2-2>의 비고를 통해 보듯, 해당 『실록』 기사에는 각 종별 소속 사찰로 ‘〇〇개 사찰을 남긴다[留]’라고 하였다. 이 ‘남긴다’는 승정체제 소속 사찰로 계속 둬으로써 국가가 계속 사사전과 사노비를 지급하고

21) 손성필, 「조선 태종·세종대 ‘혁명’ 사찰의 존립과 망폐」, 245~247쪽.

22) 1406년 개혁 당시 지방 통치체제의 위계를 논할 때, 1406년은 1405년(태종 5) 漢陽으로 다시 遷都한 직후이며, 아직 지방 통치체제의 개편, 4군 6진의 개척 등이 이루어지기 전이라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1406년 당시는 舊都 開城과 新都 漢城이 병존하던 시기이며, 대체로 고려의 지방 통치체제가 지속되던 시기였다. 1393년(태조 2)의 『實錄』 기사를 통해 볼 때, 당시 各道の 界首官은 慶尙道の 鷄林, 安東, 尙州, 晋州, 金海, 京山, 全羅道の 完山, 羅州, 光州, 楊廣道 廣州, 忠州, 淸州, 公州, 水原, 交州江陵道の 原州, 淮陽, 春州, 江陵, 三陟, 西海道の 黃州, 海州, 京畿左道の 漢陽, 鐵原, 右道の 延安, 富平 등이었다(『太祖實錄』 卷 4, 2년 11월 12일). 이에 따르면, 신도 한성을 제외한, 각 도의 계수관은 24개였다. 그렇다면 이 계수관의 관할 지역에 사사전 100結, 사노비 50口를 지급하는 사찰을 각 1개, 모두 24개 지정한 것이 된다. 그러나 신도와 구도의 各寺 중의 其餘 各寺, 일반 균읍[各官]의 邑外 各寺는 그 수를 추정하기가 어려워 보인다.

주지를 임명하여 해당 사찰의 국가적 지위와 기능을 존속시킨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반면 기존의 승정체제 소속 사찰 중 이 242개에 포함되지 않는 사찰은 승정체제 소속 사찰의 지위에서 지정 해제, 곧 혁거[革]하여 주지 임명과 사사전·사노비 지급을 중단하는 것이었다.²³⁾ 이 1406년 개혁으로 7종 242사찰의 승정체제가 성립하였는데,²⁴⁾ 이는 1424년 개혁이 단행될 때까지 18년간 운용되었다. 그러나 『실록』에는 1406년 3월의 개혁으로 지정된 242개 사찰의 전체 목록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 이로 인하여 어느 지역의 어떤 사찰이 어떤 종에 소속되었는지를 파악할 수 없으므로, 1406년 승정체제 개혁의 구체적인 면모를 파악하고 평가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따른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1406년의 승정체제 개혁은 성공적이지 못했던 듯하다. 1406년 3월 개혁이 단행된 이후, 그해 윤7월에 개혁의 문제점과 후속 조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해당 기사를 인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자료 1] 이때 司諫院에서 上言하기를, “… (중략) … 殿下께서 그 폐단을 軫慮하시어, 裨補 이외의 艱요하지 않은 寺社를 汰[汰去]하고, 이에 州府郡縣 사찰의 수[寺額]를 모두 정하시었습니다. 사찰의 크고 작음, 僧의 많고 적음을 헤아려 田民의 수를 增減함으로써, 승도로 하여금 함께 거처하면서 각기 그 道를 바로 닦도록 하였으니, 이는 역대로 일찍이 없었던 일입니다. 그러나 三韓 이래의 大伽藍이 汰去된 사례가 있고, 亡廢한 寺院에 住持를 差下한 경

23) 손성필, 「寺刹의 혁거, 철퇴, 망폐」, 63~64쪽.

24) 일반적으로 1406년 개혁 당시의 11종이, 1407년의 후속 조치로 7종으로, 1424년 개혁으로 2종으로 통합되었다고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1406년 개혁과 1407년 후속 조치의 『실록』 기사 문맥을 통해 볼 때, 사실상 1406년 개혁으로 11종이 7종으로, 1424년 개혁으로 7종이 2종으로 통합 관리된 것으로 보인다(손성필, 「寺刹의 혁거, 철퇴, 망폐」, 68~69쪽의 각주22 참조).

우가 혹 있기도 합니다. 원컨대, 전하께서 山水勝處의 大伽藍으로 亡廢한 寺院을 대체하신다면, 僧徒가 거처할 곳을 얻을 것입니다.” 하니, …(중략)… 이에 議政府에서 의논하여 아뢰기를, “山水勝處의 大伽藍으로 亡廢한 寺院을 대체하는 것은, 아뢴 대로 따르소서. …(중략)…” 하니, 그대로 따랐다.²⁵⁾

위 인용문에서 보듯, 1406년 3월 개혁 이후 약 5개월 뒤인 그해 윤7월에, 사간원에서는 먼저 태종이 裨補寺刹 이외의 중요하지 않은 사찰을 혁거하여 군읍의 사찰 수를 정하고, 사찰의 규모와 승도의 수에 따라 사사전, 사노비의 수를 증감한 공적을 칭송하였는데, 이는 바로 지난 3월 단행한 승정체제 개혁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간원에서는 지난 개혁으로 三韓 以來의 大伽藍, 山水勝處의 大伽藍이 ‘혁거’되기도 하였고, ‘망폐’한 사찰에 주지를 임명하기도 하였음을 지적하면서, ‘망폐’한 사찰을 산수승처의 대가람으로 교체하자고 건의한 것이었다. 이 기사에 따르면, 1406년 개혁으로 지정된 242개 사찰 중에는 이미 폐허화[亡廢]된 사찰이 있었으며, 명산대찰이 242개 사찰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통해 볼 때, 아마도 지방 군읍의 위계를 따른 승정체제의 대대적인 개편이 다소 무리하게 시도되었고, 성공적이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1407년 12월에 1406년 개혁의 후속 조치가 이루어졌는데, 이는 242개 사찰 중에 읍내 자복사 88개를 명산대찰로 교체하는 것이었다. 해당 기사를 인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25) 『太宗實錄』 卷12, 6년 윤7월 1일, “時司諫院上言 …(중략)… 殿下軫慮其弊 汰裨補外不緊寺刹 乃於州府郡縣 皆定寺額 量寺之大小 僧之多寡 增減田民之數 使其徒群居而各正其道 歷代以來所未曾有也 然自三韓以來大伽藍亦在汰去之例 其於亡廢寺院住持差下者 容或有之 願殿下擇山水勝處大伽藍 以代亡廢寺院 則僧徒得居止之處矣 …(중략)… 議政府議得 擇山水勝處大伽藍 以代亡廢寺院 請依所申 …(중략)… 從之”.

[자료 2] 議政府에서 名刹로 諸州의 資福寺를 대체하기를 請하니, 그대로 따랐다. 아뢰기를, “지난 해(1406)에 寺社를 革去할 때에 도리어 三韓 이래의 大伽藍이 汰去하는 예에 들고, 亡廢한 사사에 住持를 差下하는 일이 간혹 있었으니, 僧徒가 어찌 원망하는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만일 山水勝處의 大伽藍을 택하여 亡廢한 寺院을 대신한다면, 승도로 하여금 거처할 곳을 얻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이에 제주의 자복사를 모두 명찰로 대체하였는데, 曹溪宗에 梁州 通度寺 …… (하략)²⁶⁾

위 기사를 살펴보면, 1406년 승정체제 개혁으로 삼한 이래의 대가람이 혁거되기도 하고, 망폐한 사찰에 주지가 임명되기도 한 문제가 있었으므로, 망폐한 사찰을 산수승처의 대가람으로 교체한다고 하였다. 앞서 [자료 1]을 통해 확인했듯, 이는 이미 1406년 윤7월에 이미 시간원에서 아뢴 문제점이자 개선 방안이었다. 그러므로 1407년의 승정체제 개혁 후속 조치는, 이미 1406년 윤7월에 이루어진 건의에 따른 것이었고, 이후 1여 년의 논의 끝에 1407년 12월의 후속 조치가 단행된 것이었다. 그런데 위 기사를 통해 1407년의 후속 조치를 살펴보면, 망폐한 사찰을 명산 대찰로 대체한다고 하였는데, 실제 시행된 조치는 ‘군읍의 자복사’를 명산 대찰로 대체하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볼 때, 당시 승정체제 소속의 242개 사찰 중에서 망폐한 사찰은 대부분 ‘읍내 자복사’였던 것으로 보인다.²⁷⁾ 또한 앞

26) 『太宗實錄』 卷14, 7년 12월 2일. “議政府請以名刹代諸州資福 從之 啓曰 去年 寺社革去之時 自三韓以來大伽藍 反在汰去之例 亡廢寺社差下住持者 容或有之 僧徒豈無怨咨之心 若擇山水勝處大伽藍 以代亡廢寺院 則庶使僧徒得居止之處 於是諸州資福寺皆代以名刹 曹溪宗 梁州通度寺 …… (하략)”.

27) 후술하는 1412년의 조치에 대한 기사를 통해 볼 때(『太宗實錄』 卷24, 12년 12월 11일), ‘망폐한 사사에 주지를 임명한 사례[亡廢寺社差下住持者]’는, 곧 ‘자복사로서 건물이 없는 사찰[資福寺無間閣者]’에 주지를 임명한 것을 지칭했다. 그러므로 망폐한 사찰에 주지를 임명한 사례는 대체로 읍내 자복사에 해당했던 것으로 보인

서 <표 2-1>에서 살펴보았듯 1406년 개혁에 따라 군읍의 읍내 자복사에 는 사사전 20결, 사노비 10구의 지급이 규정되었는데, 이 읍내 자복사의 수가 88개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²⁸⁾

이처럼 1407년 12월의 후속 조치를 통해, 1406년 개혁으로 지정된 승정체제 소속 242개 사찰 중에 88개 사찰을 교체하였다. 기존에 지정된 읍내의 자복사를 242개 사찰에서 제외한 대신, 새로 명산대찰 88개를 지정 한 것이었다. 위 기사의 맥락으로 볼 때, 이때 새로 지정된 명산대찰 88개 는 ‘삼한 이래의 대가람’, ‘산수승처의 대가람’으로, 대체로 1406년 개혁 이 전에는 승정체제 소속 사찰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찰들은 1406년 3 월에 지정 해제되었다가, 약 2년 뒤인 1407년 12월에 승정체제 소속 사찰 로 다시 지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88개 명산대찰에는 읍내 자복사 에 지급된 사사전 20결, 사노비 10구가 지급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승정체 제 소속의 여타 사찰에 비하면 국가의 경제적 지원 규모는 적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88개 사찰의 목록은 위 [자료 2]의 하단에 기재되었는데, 이를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²⁹⁾

<표 3> 1407년 읍내 자복사 교체 88개 명산대찰 목록

종	소재지 및 사찰명	사찰수
曹溪宗	梁州 通度寺, 松生 雙巖寺, 昌寧 蓮花寺, 砥平 菩提岬寺, 義城 氷山寺, 永州 鼎覺寺, 彦陽 石南寺, 義興 麟角寺, 長興 迦智寺, 樂安 澄光寺, 谷城 桐裏寺, 減陰 靈覺寺, 軍威 法住寺, 基川 淨林寺, 靈巖 道岬寺, 永春 德泉寺, 南陽 弘法寺, 仁同 嘉林寺, 山陰 地谷寺, 沃州 智勒寺, 耽津 萬德寺, 青陽 長谷寺, 稷山 天興寺, 安城 石南寺	24

다. [자료 3]에 대한 논의 참조.

28) 고려시대의 자복사는 해당 군읍의 邑治에 설치되었으며, 행정, 사회, 사상, 문화 등 의 측면에서 다양한 기능을 담당하였다. 고려시대의 자복사에 대해서는 한기문, 「고려시대 資福寺의 성립과 존재 양상」, 『민족문화논총』 49, 2011 참조.

29) 손성필, 「조선 태종·세종대 ‘혁거’ 사찰의 존립과 망폐」, 260~261쪽.

天台宗	忠州 嚴正寺, 草溪 白巖寺, 泰山 興龍寺, 定山 雞鳳寺, 永平 白雲寺, 廣州 靑溪寺, 寧海 雨長寺, 大丘 龍泉寺, 道康 無爲寺, 雲峰 原水寺, 大興 松林寺, 文化 區業寺, 金山 眞興寺, 務安 大嶮寺, 長沙 禪雲寺, 堤州 長樂寺, 龍駒 瑞峰寺	17
華嚴宗	長興 金藏寺, 密陽 嚴光寺, 原州 法泉寺, 淸州 原興寺, 義昌 熊神寺, 江華 梅香寺, 襄州 成佛寺, 安邊 毗沙寺, 順天 香林寺, 淸道 七葉寺, 新寧 功德寺	11
慈恩宗	僧嶺 觀音寺, 楊州 神穴寺, 開寧 獅子寺, 楊根 白巖寺, 藍浦 聖住寺, 林州 普光寺, 宜寧 熊仁寺, 河東 陽景寺, 綾城 公林寺, 鳳州 成佛寺, 驪興 神異寺, 金海 甘露寺, 善州 原興寺, 咸陽 嚴川寺, 水原 彰聖寺, 晉州 法輪寺, 光州 鎮國寺	17
中神宗	任實 珍丘寺, 咸豐 君尼寺, 牙州 桐林寺, 淸州 菩慶寺, 奉化 太子寺, 固城 法泉寺, 白州 見佛寺, 益州 彌勒寺	8
摠南宗	江陰 天神寺, 臨津 昌和寺, 三陟 三和寺, 和順 萬淵寺, 羅州 普光寺, 昌平 瑞峯寺, 麟蹄 玄高寺, 雞林 天王寺	8
始興宗	漣州 五峯寺, 連豐 霞居寺, 高興 寂照寺	3
계		88

위 표에서 보듯, 강진 무위사는 1407년에 승정체제 소속 사찰로 다시 지정된 88개 사찰의 목록에서 확인된다. 무위사는 여타 88개 사찰과 마찬가지로 1406년 3월 승정체제 소속 사찰에서 지정 해제되었다가, 약 2년 후인 1407년 12월 승정체제 소속 사찰로 다시 지정된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무위사는 1406년 개혁으로 성립한 승정체제 소속 242개 사찰 중의 하나가 되었는데, 이는 무위사가 국가가 승직인 주지를 임명하고 사사전을 지급하는 사찰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약 5년 이후인 1412년(태종 12)에 이 1407년의 승정체제 개혁 후속 조치는 철회된 것으로 보인다. 1412년 12월 읍내 자복사를 대신하여 명산대찰에 주지를 임명하던 것을 중지하고, 다시 읍내 자복사에 주지를 임명하는 조치가 이루어졌는데, 이는 1407년 후속 조치를 철회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해당 기사를 인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자료 3] 諸州의 資福 住持에게 命하여 모두 本寺로 들어가도록 하였다. 河崙이 아뢰었다. “근래에 臣이 晉陽에 이르러 資福寺를 보았는데, 그 住持인 자가 他寺로 옮겨가 기거하니, 심히 未便하였습니다. 청하옵건대, 諸州의 資福을 모두 本寺로 들어가도록 하소서.” 하였다. 代言 韓尙德이 말하였다. “지난번에 寺社를 革할 때 명하기를, ‘僧은 私家에 갈 수 없고, 여자[女]는 寺社에 갈 수 없다. 그 婢子는 모두 10里 밖에서 살게 하라. 또 資福寺로서 閭閻이 없는 사찰은 山水勝處의 他寺로서 대체하라.’ 하였는데, 이제 僧으로 하여금 굳이 閭閻의 사이에서 거처하게 하신다면, 이는 앞선 法들과 상충될 듯합니다.” 하였다. 上이 말하였다. “너(한상덕)의 말이 옳다. 그러나 資福은 아직 革하지 않았으니, 마땅히 政丞(하륜)의 말을 따르겠다.” 하였다.³⁰⁾

위 자료에서 보듯, 河崙(1347~1416)이 晉州에 이르러 자복사를 보았는데, 그 주지가 ‘他寺’에 옮겨가 기거하니 심히 未便하였다고 하면서, 군읍 자복사를 모두 ‘本寺’로 들어가도록 하자고 건의하였다. 이에 韓尙德(?~1434)은 이러한 건의에 따라 승도가 여염집의 사이에 거처하게 한다면, 기존에 자복사로서 건물[閭閻]이 없는 사찰을 산수승처의 ‘타사’로 대체하도록 한 조치 등과 상충될 것이라고 하면서 반대하였다.³¹⁾ 그러나 태

30) 『太宗實錄』 卷24, 12년 12월 11일, “命諸州資福住持皆入本寺 河崙啓曰 日者 臣到晉陽 見資福寺 其爲住持者移寓他寺 甚爲未便 乞諸州資福 皆令入本寺 代言韓尙德曰 曩者革寺社時 令曰 僧不得到私家 女不得到寺社 其婢子 皆令居十里之外 又資福寺無閭閻者 以山水勝處他寺代之 今欲使僧必居閭閻之間 則是與前法若不相似然 上曰 爾言是也 然資福未革 當從政丞之言”.

31) ‘자복사로서 건물이 없는 사찰[資福寺無閭閻者]’을 산수승처의 타사로 대체하도록 한 기존의 조치는, 곧 1407년의 승정체제 개혁 후속 조치를 지칭하는 것이다. [자료 2]의 1407년 후속 조치 기사를 살펴보면, ‘망폐한 사사에 주지를 임명한 사례[亡廢寺社差下住持者]’가 혹 있기도 하였다고 하면서, 군읍의 자복사를 명산대찰로 대체하였다. 그렇다면 위 [자료 3]의 ‘자복사로서 건물이 없는 사찰’은, 곧 [자료 2]의 ‘망폐한 사사’라고 할 수 있다.

중은 아직 자복사 제도를 혁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군읍의 자복사 주지에게 명하여 모두 ‘본사’로 들어가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위 기사의 맥락을 통해 볼 때, ‘본사’는 ‘읍내의 자복사’를 지칭하며, ‘타사’는 읍내의 자복사를 대체한 ‘명산대찰’을 지칭한다고 할 수 있다. 하륜은 진주 읍내의 자복사에 이르렀으나, 1407년 후속 조치에 따라 자복사의 주지는 진주 邑外의 法輪寺에 기거하고 있었던 것이다.³²⁾ 하륜은 자복사의 주지가 읍외의 사찰에 기거하는 것은 자복사의 운영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자복사의 주지가 다시 읍내의 자복사로 들어가도록 하자고 건의하였고, 태종이 이를 따랐다. 이는 사실상 읍내 자복사를 명산대찰로 대체한 1407년 후속 조치를 철회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에 강진 무위사 등의 88개 명산대찰은 1412년에 자복사의 지위에서 지정 해제되었고, 승정체제 소속 사찰의 지위에서도 지정 해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³³⁾

실제로 1412년에서 1424년 사이의 『실록』 기사를 통해 볼 때, 읍내 자

32) 앞의 <표 3>의 慈恩宗에서 晉州 法輪寺가 확인된다. 범륜사는 진주 읍외인 月牙山 동쪽에 소재한 사찰이었다(『新增東國輿地勝覽』 卷30, 慶尙道 晉州牧).

33) [자료 2]의 1407년 후속 조치 기사에서, ‘명산대찰로 군읍의 자복사를 대체하였다 [以名刹代諸州資福]’라고 하였는데, 이는 ‘①읍내의 자복사 대신 명산대찰을 군읍의 자복사로 지정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②자복사를 폐지하고 그 대신 명산대찰을 승정체제 소속 사찰로 지정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 보인다. [자료 3]의 1412년 철회 조치 기사를 해석할 때, 자복사의 주지가 읍외의 사찰로 옮겨가 주석 하였으므로, 그 읍외의 사찰(명산대찰)을 자복사로 지정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하륜은 여전히 읍내의 자복사를 자복사로 인식하였고, 그 주지가 읍외의 사찰로 옮겨가 기거하는 것일 뿐이었다고 한다면, 읍외의 사찰(명산대찰)은 자복사가 아니었다고 해석될 여지도 없지 않다. 그러므로 1407년 ‘자복사의 명산대찰 대체’ 조치는 제대로 안착되지 못하고, 약 5년 이후인 1412년 철회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결국 1407~1412년에 강진 무위사 등의 88개 명산대찰을 자복사로 지정한 것은, 1406년 승정체제 개혁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일시적인 조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듯하다.

복사 제도는 1424년 승정체제 개혁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되었다. 1420년(세종 2) 1월 승정체제 개혁을 논의할 때,³⁴⁾ 군읍의 자복사[各道州郡資福寺社], 평지의 사찰[不革寺社皆於平地], 촌락에 있는 사찰[寺社在村落者] 등이 주요 개혁 대상으로 인식되었는데, 이는 사실상 ‘읍내의 자복사’라고 할 수 있으며, 대체로 이 사찰들의 사사전을 명산대찰에 분급해야 한다고 논의되었다. 이를 통해 볼 때 당시에 읍내 자복사 제도는 지속되고 있었고, 이를 혁거하여 명산대찰에 사사전을 분급하자는 논의도 지속되고 있었다. 그리고 1424년 3월에 세종은 승정체제 개혁을 지시하면서 유명무실한 군읍의 자복사[有名無實各官資福寺]를 모두 혁거하라고 하였다.³⁵⁾ 이로써 볼 때 당시까지도 읍내 자복사 제도가 지속되었으나 유명무실하다고 인식되었으며, 이에 따라 읍내 자복사 제도는 1424년 4월의 승정체제 개혁으로 완전히 폐지되기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³⁶⁾

이처럼 1406년의 승정체제 개혁은 지방 군읍의 위계를 따른 승정체제의 대대적인 개편이 다소 무리하게 시도됨으로 인해 성공적이지 못했고, 이에 따라 읍내 자복사의 혁거 여부가 계속 논란이 되었다. 그러므로 1406년 개혁의 이러한 실패가 사실상 1424년 개혁 단행의 배경이 되었다고 할 수 있을 듯하며, 이에 1424년 개혁은 주요 명산대찰에 사사전을 분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4) 『世宗實錄』卷7, 2년 1월 26일.

35) 『世宗實錄』卷23, 6년 3월 13일.

36) 김용태는 시대 의식의 변화와 지역 질서의 재편에 따라 邑治의 사찰이 이전과 같은 위상을 가질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았으며(김용태, 「조선전기 억불정책의 전개와 사원경제의 변화상」, 『조선시대사학보』 58, 2011, 10~12쪽), 이는 기본적으로 타당한 해석으로 보인다. 그러나 1412년에 하륜의 건의에 따라 1407년의 조치가 철회되고 읍내 자복사 제도가 1424년까지 지속된 것을 통해 볼 때, 이 시기에는 기존 읍내 자복사 제도를 계속 유지하고자 한 흐름도 분명히 있었으며, 이로 인해 이 제도의 유지와 폐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2. 1424년 승정체제 개혁과 ‘지정 사찰’, ‘일반 사찰’

태종대인 1406년의 개혁에 이어, 세종대인 1424년 4월에 승정체제 개혁이 단행되었다. 1424년 개혁의 주요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³⁷⁾

〈표 4〉 1424년 4월 승정체제 개혁의 주요 내용

연번	종	사찰 정수	사사전	恒居僧	승정 기구	비 고
1	禪宗	18寺	4,250結	1,970	禪宗 (都會所: 興天寺)	“仍革僧錄司 以京中興天寺爲禪宗都會所 興德寺爲教宗都會所 揀取年行俱高者 以爲兩宗行首掌務 令察僧中之事”
2	教宗	18寺	3,700結	1,800	教宗 (都會所: 興德寺)	

위 표에서 보듯 1424년의 승정체제 개혁은 1406년의 개혁과 마찬가지로 소속 종, 지정 사찰, 사사전 결수, 상주승 인원 등을 유기적으로 규정하였다. 기존의 7개 종을 禪宗과 教宗의 2개 종[兩宗]으로 통합하였고, 242개의 지정 사찰을 36개로 대폭 감축하였으며, 앞서 1419년에 사노비가 모두 혁거되면서 사노비의 구수는 더 이상 규정되지 않았다.³⁸⁾ 그리고 1406년 개혁은 균읍의 위계, 소속 종, 소재지 등의 기준에 따라 사사전 결수, 사노비 구수, 상주승 인원 등의 체계적인 규정을 시도한 데 비해, 1424년 개혁은 각 지정 사찰별로 상주승 인원과 사사전 결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는데, 이는 36개 지정 사찰의 元屬田에 사사전을 추가로 지급[加給]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실록』에는 36개 지정 사찰의 목록과 그 각각의 사사전 결수 및 상주승 인원을 세세하게 기재해 두었다.

『실록』 기사에 의거하여 1424년 개혁에 따라 규정된 36개 지정 사찰

37) 손성필, 「조선 태종·세종대 ‘혁거’ 사찰의 존립과 망폐」, 247~248쪽.

38) 『世宗實錄』 卷6, 1년 11월 28일.

의 목록과 그 사사전 결수, 상주승 인원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³⁹⁾

〈표 5〉 1424년 3월 승정체제 개혁의 지정 사찰 목록

禪宗 屬寺 (18)						敎宗 屬寺 (18)					
道	郡邑	寺名	元屬田 (結)	加給田 (結)	恒居僧 (員)	道	郡邑	寺名	元屬田 (結)	加給田 (結)	恒居僧 (員)
	京中	興天寺	160	90	120	京中		興德寺	250	-	120
	留後司	崇孝寺	100	100	100	留後司		廣明寺	100	100	100
		演福寺	100	100	100			神巖寺	60	90	70
	開城	觀音堀	45	105 100*	70	開城		甘露寺	40	160	100
京畿	楊州	僧伽寺	60	90	70	京畿	海豐	衍慶寺	300	100	200
		開慶寺	400	-	200		松林	靈通寺	200	-	100
		檜巖寺	500	-	250		楊州	藏義寺	200	50	120
		津寬寺	60	90 100*	70			逍遙寺	150	-	70
	高陽	大慈菴	152.96	97.04	120	忠清	報恩	俗離寺	60	140	100
忠清	公州	鷄龍寺	100	50	70	忠州	寶蓮寺	80	70	70	
慶尙	晉州	斷俗寺	100	100	100	慶尙	巨濟	見巖寺	50	100	70
	慶州	祇林寺	100	50	70		陝川	海印寺	80	120	100
全羅	求禮	華嚴寺	100	50	70	全羅	昌平	瑞峯寺	60	90	70
	泰仁	興龍寺	80	70	70		全州	景福寺	100	50	70
江原	高城	楡岾寺	205	75	150	江原	淮陽	表訓寺	210	90	150
	原州	覺林寺	300	-	150	黃海	文化	月精寺	100	100	100
黃海	殷栗	亭谷寺	60	90	70		海州	神光寺	200	50	120
咸吉	安邊	釋王寺	200	50	120	平安	平壤	永明寺	100	50	70
계			2,823	1,427	1,970	계			2,340	1,360	1,800
			4,250						3,700		

*는 水陸位田임

39) 손성필, 「조선 태종·세종대 '혁거' 사찰의 존립과 망폐」, 263~265쪽.

위 표에서 보듯 1424년 개혁으로 종이 2개로 통합되었으며, 36개 사찰이 지정되고, 사사전이 7,950결로, 상주승이 3,770명으로 감축되었다. 1406년 체제의 242개 사찰이 36개로 감축되고, 사사전 11,100여 결이 7,950결로, 상주승 약 5,550명이 3,770명으로 감축된 것이다. 이는 지정 사찰로 보면 15%로 크게 감축된 것이었지만, 사사전 결수와 상주승 인원으로 보면 70% 수준으로 소폭 감축된 것이었다. 1424년 개혁은 242개 사찰에서 혁거된 사찰의 사사전을 36개 사찰에 추가 지급하거나 국가에 속공하는 방식으로 단행되었는데, 위 표의 원속전과 가급전 결수를 통해 볼 때, 11,100여 결의 사사전 중에 206개 사찰의 약 5,930여 결이 혁거되었으며, 이 5,930여 결 중에 약 3,150결은 국가로 속공되었고, 2,787결은 36개 사찰에 추가 지급되었다고 할 수 있다. 1424년의 개혁은 지정 사찰의 수는 대폭 감축하면서도, 36개 지정 사찰에 지급하는 사사전의 결수는 증액하는 방향으로 추진된 것이다.

이를 통해 볼 때 1424년의 개혁은 국가와 왕실에서 중시한 주요 36개 명산대찰을 중심으로 승정체제를 재편하고, 이 사찰들에 대한 사사전 지급을 증액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⁴⁰⁾ 이로써 성립된 2개의 종, 36개 사찰의 승정체제는 연산군대까지 약 80여 년간 대체로 큰 변동 없이 운용되었다. 그러므로 이 2종 36사의 승정체제는 1406년 개혁과 1424년 개혁을 통해 고려의 승정체제를 감축하고 재편함으로써 성립한, 조선의 승정체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⁴¹⁾

2종 36사의 승정체제는 사찰의 혁거와 신규 지정으로 지정 사찰을 교체하고, 사사전의 혁거와 이급으로 사사전 결수가 변경되는 등의 다소간의 변화를 거치면서 운영되었다. 15세기 중엽인 세종대 후기~단종대

40) 손성필, 「조선 태종·세종대 ‘혁거’ 사찰의 존립과 망폐」, 265쪽.

41) 손성필, 「조선 태종·세종대 ‘혁거’ 사찰의 존립과 망폐」, 271쪽.

의 지정 사찰과 사사전 결수는 『世宗實錄地理志』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데,⁴²⁾ 이를 1424년 개혁으로 지정된 사찰과 비교해 보면, 지정 사찰의 수 자체는 36개로 변동이 없으나, 景福寺, 華嚴寺, 亭谷寺, 瑞峯寺, 興龍寺 등의 5개 사찰이 重興寺, 興教寺, 松廣寺, 正陽寺, 長安寺 등으로 교체되었다.⁴³⁾ 『실록』을 통해 이 사찰들의 지정 및 혁거, 사사전 이급 결수가 대부분 확인되는데, 1424년 3월 개혁 단행 이후, 1424년 4월에 전주 경복사를 혁거하여 강릉 상원사를 지정하였고,⁴⁴⁾ 1424년 10월에 구례 화엄사와 은율 정곡사를 혁거하여 순천 송광사와 유후사 흥교사를 지정하였으며,⁴⁵⁾ 1425년 5월에 창평 서봉사와 태인 흥룡사를 혁거하여 회양의 정양사와 장안사를 지정하였다.⁴⁶⁾

15세기 후반인 성종대에 이르러 지정 사찰은 43개로, 사사전 결수는 10,000여 결로 증가하였다.⁴⁷⁾ 이는 세조대에서 성종대에 이르는 시기에 福泉寺, 圓覺寺, 奉先寺, 洛山寺, 正因寺, 報恩寺(神勒寺) 등을 새로 지정하여 사사전을 새로 지급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⁴⁸⁾ 성종대에 사사전의 결수가 태종대 1406년 개혁의 11,100여 결에 가까이 이르렀다는 점, 대체로 세조대 이후에 지정 사찰의 수, 사사전의 결수가 다소 증가했다는 점,

42) 손성필, 「조선 태종·세종대 '혁거' 사찰의 존립과 망폐」, 266~169쪽.

43) 『世宗實錄地理志』에 기재된 사사전의 결수도 크게 변동은 없으나, 사찰별로 다소 증액되거나 감축되었는데, 전체 사사전 결수는 150결을 증액하여 8,100결이 되었음이 확인된다(손성필, 「조선 태종·세종대 '혁거' 사찰의 존립과 망폐」, 269쪽).

44) 『世宗實錄』 卷24, 6년 4월 28일.

45) 『世宗實錄』 卷26, 6년 10월 25일.

46) 『世宗實錄』 卷28, 7년 5월 12일. 다만 양주 증흥사를 지정한 기록은 『실록』에서 확인되지 않는데, 1425년 이후에 강릉 상원사를 혁거하여 양주 증흥사를 지정한 것으로 추정된다(손성필, 「조선 태종·세종대 '혁거' 사찰의 존립과 망폐」, 269쪽).

47) 『成宗實錄』 卷96, 9년 9월 29일; 卷166, 15년 5월 15일. 손성필, 「조선 태종·세종대 '혁거' 사찰의 존립과 망폐」, 265~266쪽.

48) 손성필, 「조선 태종·세종대 '혁거' 사찰의 존립과 망폐」, 271~272쪽.

송불 군주로 알려진 세조가 지정 사찰과 사사전의 수를 크게 증액하지는 않았다는 점 등은 주목되는 현상이다. 이처럼 1424년에 비해 7개 사찰, 약 2,000결의 사사전이 증가하기는 하였지만, 대체로 1424년의 개혁으로 성립한 조선의 승정체제는 큰 변동 없이 80여 년간 유지되었다고 할 수 있다.

강진 무위사는 1406년과 1424년의 개혁으로 승정체제 소속 사찰에서 지정 해제되었다. 사실 무위사는 고려초기 이래 승정체제 소속 사찰의 위상을 유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무위사에는 946년(고려 정종 1) 先覺大師 遍微(864~917)의 탑비가 건립되었다.⁴⁹⁾ 고려 태조는 921년(고려 태조 4) 형미에게 시호로 선각대사를 하사하였고, 탑명은 遍光靈塔이라 하였다.⁵⁰⁾ 이에 崔彦擣(868~944)에게 비문을 찬술하게 하였고, 946년에 이르러 무위사에 선각대사탑비가 건립된 것이다. 이처럼 무위사의 선각대사탑비는 고려초기에 국가적으로 건립된 것으로, 무위사는 형미가 당나라에 유학한 후 귀국하여 주석한 사찰이었다. 고려시대 고승비를 건립할 수 있는 고승은 극히 제한적이었고, 불교계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국왕의 존숭을 받는 고승에 한하여 고승비가 건립될 수 있었다.⁵¹⁾ 고승비가 건립된 사찰은 국가로부터 지원과 관리를 받을 수 있었으며, 해당 사찰에 대한 문도의 권한을 국가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기도 했다.⁵²⁾ 그러므로 무위사는 광종대 이후 고려의 승정체제가 정비된 이후에도 승정체제 소속 사찰

49) 「高麗國故無爲岬寺先覺大師遍光靈塔碑銘并序」(조동원 편, 『韓國金石文大系 1: 全羅南北道』, 원광대학교 출판국, 1979, 31쪽; 문화유산연구지식포털, <https://portal.nrich.go.kr>). 최연식, 「고려 왕조의 개창을 도운 남도의 두 '선각(先覺)'스님: 선각대사 형미와 선각국사 도선」, 『(2020 찾아가는 박물관 강좌) 남도, 남도인, 남도문화』, 목포대학교박물관, 2020.

50) 형미의 승탑이 건립된 곳은 開城 五冠山이었다. 고려 태조는 사찰을 조성하여 형미의 승탑을 건립하도록 하고, 사찰은 太安寺, 승탑은 遍光靈塔이라고 명명하였다.

51) 최연식, 「高麗時代 高僧의 僧碑와 門徒」, 『한국중세사연구』 35, 한국중세사학회, 2013, 28쪽.

52) 최연식, 「高麗時代 高僧의 僧碑와 門徒」, 28~30쪽.

로, 국가가 주지를 임명하고 사사전을 지급하는 사찰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실제로 위 [자료 2]의 1407년 후속 조치 기사의 맥락을 통해 볼 때, 무위사는 1406년 이전에는 승정체제 소속 사찰이었으나, 1406년의 개혁으로 지정 해제되었다가 1407년 읍내 자복사를 대체하여 다시 승정체제 소속 사찰로 지정되었다. 1407년 무위사 등의 88개 사찰이 승정체제 소속 사찰로 다시 지정된 명분은 이 사찰들이 ‘명산대찰’, ‘삼한 이래의 대가람’, ‘산수승처의 대가람’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무위사는 고려초기인 946년 선각대사탑비가 건립된 이래, 1406년의 승정체제 개혁이 단행되기까지, 승정체제 소속 사찰이라는 국가적 위상을 대체로 유지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412년에 읍내 자복사를 명산대찰로 대체한 조치가 철회되면서, 무위사는 다시 승정체제 소속 사찰의 지위에서 지정 해제되었다. 이후 무위사는 1424년의 개혁에 따른 승정체제 소속 36개 사찰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처럼 무위사는 고려초기 이래로 승정체제에 소속된 ‘지정 사찰’이라는 국가적 위상을 대체로 유지해 왔으나, 1406년과 1424년의 승정체제 개혁으로 인해 ‘일반 사찰’이 되었다.⁵³⁾ 주지 임명, 사사전 지급 등을 통해

53) 고려후기, 조선전기 사회에는 승정체제 소속 사찰 이외에도 다수의 사찰이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대체로 승정체제 소속 사찰이 불교계를 주도했던 것으로 보이나, ‘승정체제 소속 사찰’과 ‘일반 사찰’의 상호관계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15세기 후반 편찬되어 16세기 전반 증보된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군현 별로 대표적인 사찰 1,600여 개가 수록되었고, 『성종실록』에서는 당시의 사찰 수가 9,500개에 이른다는 기사도 확인된다(『成宗實錄』 卷122, 11년 10월 26일). 한편, 고려와 조선에는 불교, 승도, 사찰에 대하여 승정체제 관련 제도나 법규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예컨대 조선초기에는 사찰의 新創을 금지하는 법규가 마련되었는데, 이는 기존의 사찰은 그대로 두되 새로 사찰을 창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일 따름이었다. 그러므로 이 법규는 사찰의 승정체제 소속 여부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었고, ‘일반 사찰’이 더 이상 증설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 위한 것일 뿐이었다

국가가 지원하고 관리하던 사찰에서, 국가의 지원과 관리를 받지 않는 사찰이 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로써 무위사는 그 자체적인 경제 기반의 유무나 확보에 따라 유지될 수도, 퇴락할 수도, 망폐할 수도 있는 일반 사찰이 되었다. 하지만 15세기에는 국가와 사찰이 일정한 상호관계를 유지하는 제도로 승정체제만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Ⅲ. 15세기 중·후반 승정체제의 지속과 ‘수륙사’ 지정

1. 15세기 수륙사의 지정과 국행 수륙재의 실행

『東國輿地勝覽』에 따르면 강진 무위사는 15세기 후반에 ‘수륙사’가 되었다. 이 장에서 자세히 논하겠지만, 수륙사는 국가나 왕실이 지정하는 것이었으며, 무위사가 수륙사로 지정된 것은 『동국여지승람』이 편찬된 1481년(성종 12) 무렵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이 무위사의 수륙사 지정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당시에 수륙사가 무엇이었고, 어떻게 운영되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⁵⁴⁾

주지하다시피 水陸齋는 물과 물을 떠도는 無主孤魂에게 음식을 베푸는 施食供養을 함으로써 이들을 천도하는 불교의식으로 알려져 있다. 수륙재에 대한 이러한 정의는 ‘수륙재’라는 용어를 고려하여 그 대상과 목적

(손성필, 「寺刹의 혁거, 철퇴, 망폐」, 72~75쪽). 이처럼 불교, 승도, 사찰에 대한 국가의 제도나 법규는 그 목적, 대상 등에 따라 달리 분석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54) 15세기의 ‘수륙사’에 대한 기존 연구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듯하다. 기존 연구에서는 대부분 불교의례인 ‘수륙재’를 중심으로 논의하였으며, 국가나 왕실이 수륙재 실행을 위해 특정 사찰을 지정하는 제도인 ‘수륙사’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았다.

이 수륙의 무주고혼을 천도하는 데 있다는 데에 충실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조선전기에 수륙재는 그 주제, 목적, 대상, 장소 등이 다양하였다.⁵⁵⁾ 조선전기에 수륙재는 국가나 왕실이 주도하여 설행하기도, 사찰과 승도가 주도하여 설행하기도 하였고, 무주고혼을 천도하기 위해 설행되기도 한 반면, 특정 인물을 천도하기 위한 일종의 상·제례 의식으로 설행되기도 하였으며, 사찰에서 설행되기도, 야외에서 설행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수륙재는 수륙의 고혼을 천도하기 위해 설행되기 시작한 일정한 형식과 절차의 불교의식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해 보인다.

조선이 건국된 후 수륙재는 국가적인 불교의식으로 정착되었다. 국가는 고려 王氏를 천도하기 위해서나, 朝宗의 先王·先後를 천도하기 위해 수륙재를 설행하였고, 상·제례 의식인 七七齋, 追薦齋, 忌晨齋 등을 수륙재로 설행하기도 하였으며, 무주고혼을 천도하기 위해 설행되기도, 각종 재난에 대비하거나 재난을 타개하기 위한 祈禳儀禮로 설행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수륙재는 국가가 주체가 되어 설행하기도, 왕실이 주체가 되어 설행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수륙재는 15세기에 국가적인 불교의식으로 정착된 이래, 16세기 이후에는 사찰과 민간에서 보편적인 불교의식으로 확산되어 간 것으로 보인다.

‘수륙사’는 수륙재 설행을 위해 지정된 사찰을 지칭하기도, 수륙재 설행을 위한 건물이나 조직을 지칭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津寬寺는 국가가 수륙재 설행을 위해 지정한 사찰인데, 사찰 경내에 수륙재 설행을 위한 건물을 별도로 조성하였다. 이에 당시의 기록에는 진관사를 수륙사로 지칭

55) 조선전기의 수륙재에 대해서는 강호선, 「조선 태조 4년 國行水陸齋 설행과 그 의미」, 『한국문화』 62, 2013; 「수륙재」, 『테마 한국불교 2』, 동국대학교출판부, 2014; 「조선전기 국가의례 정비와 ‘국행’수륙재의 변화」, 『한국학연구』 44, 2017; 박정미, 「조선시대 佛敎式 喪·祭禮의 설행양상: 왕실의 국행불교상례와 사족의 봉제사사안을 중심으로」, 숙명여대 역사문화학과 박사논문, 2015, 45~52쪽, 61~69쪽 등 참조.

하기도 하였고, 진관사 경내에 조성된 건물을 수륙사로 지칭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수륙재를 설행하도록 지정된 사찰 자체를 수륙사로 지칭하는 것이 더 일반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 건국 후 국가가 처음 수륙사로 지정한 사찰은 三和寺, 見巖寺, 觀音窟이었다. 태조는 1395년(태조 4) 前朝 고려 왕실을 천도하기 위해 삼화사, 현암사, 관음굴에서 '國行 水陸齋'를 설행하도록 하였다. 이 1395년 삼화사, 현암사, 관음굴의 국행 수륙재 설행은 조선 최초의 국행 수륙재 설행이었다는 점, 수륙재가 국가의 공식 의례로 설행되었다는 점, 매년 두 번 정기적으로 설행되었다는 점, 국행 수륙재의 의식 절차가 성립되었다는 점, 후대의 수륙재 설행에 미친 영향이 크다는 점 등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⁵⁶⁾

태조는 1397년(태조 6) 진관사에 수륙사를 조성하고 국행 수륙재를 설행하도록 하였다. 삼화사, 현암사, 관음굴의 수륙재와 같이 매년 두 번 국가의 정기적 의례로 설행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진관사의 수륙재는 고려 왕실을 천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조선 태조의 先祖, 곧 조종의 명복을 빌기 위해 설행되었다. 진관사를 수륙사로 지정하여 수륙재를 설행한 목적이 삼화사, 현암사, 관음굴과는 다른 것이었다. 權近(1352~1409)이 당시 진관사 수륙사 조성에 대해 기술한 「津寬寺水陸社造成記」의 일부 내용을 인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자료 4] 洪武 정축년(1397) 정월 을묘일에, 上이 內臣 李得芬과 沙門 臣 祖禪 등에게 명하여 말하기를, “내가 국가를 경영하게 됨은 오직 祖宗이 덕을 쌓은 데 힘입은 것이므로 선조의 은덕에 보답하기 위하여 힘쓰지 않으면 안 된다. 또 臣民 중에 혹은 나랏일로 죽고, 혹은 스스로 죽은 자 가운데 제사를 말

56) 강호선, 「조선 태조 4년 國行水陸齋 설행과 그 의미」, 227~230쪽.

을 사람이 없어 저승길에서 굶주리고 있어져도 구제받지 못함을 생각하니, 내가 매우 근심스럽다. 이에 古刹에 水陸道場을 세우고 매년 재를 설행하여 조종의 冥福을 빌고 또 중생을 이롭게 하고자 하니, 너희들은 가서 합당한 곳을 찾아보라."라고 하였다.⁵⁷⁾

위 인용문에서 보듯 태조가 진관사에 수륙사를 조성하여 수륙재를 설행하도록 한 목적은 조종의 명복을 빌고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함이었다. 이와 같은 수륙사 조성의 목적이 「진관사수륙사조성기」의 구성과 내용 전반에 뚜렷하게 서술되어 있는데, 특히 위에 인용한 태조의 발언을 통해 그 목적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수륙사 조성의 목적으로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한 것임을 함께 표방하기는 하였으나, 그 일차적 목적은 조종의 명복을 빌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삼화사, 현암사, 관음굴과는 달리, 진관사는 조종의 명복을 빌기 위한 수륙사로 지정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조선초기 국가가 수륙사를 지정하여 수륙재를 설행한 목적은 크게 고려 왕실의 천도를 위한 것과 조종의 명복을 빌기 위한 것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1397년 진관사 수륙사 지정 이후, 수륙사는 대체로 조종의 명복을 빌기 위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고려 왕실의 천도를 위한 수륙재의 설행은 조선초기 이후 점차 중요성이 퇴색되어 갔는데,⁵⁸⁾ 삼화사는 1414년(태종 14)에 이미 수륙사의 위상을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⁵⁹⁾ 관음굴과

57) 權近, 「津寬寺水陸社造成記」(『東文選』 卷78; 『陽村集』 卷12), “洪武丁丑正月乙卯 上命內臣李得芬 沙門臣祖禪等若曰 予有邦家 惟賴祖宗積慶 圖報先德 靡所不力 又念臣民或死王事 或自殞命 而無主祀 飢餓顛隲於冥冥之中 而莫之救 予甚愍焉 欲於古刹 爲建水陸道場 歲設以追祖宗冥福 且利群生 爾往相之”.

58) 강호선, 「조선 태조 4년 國行水陸齋 설행과 그 의미」, 231쪽.

59) 『太宗實錄』 卷27, 14년 2월 6일. 강호선, 「조선 태조 4년 國行水陸齋 설행과 그 의미」, 225~226쪽. 1414년의 『실록』 기사에 삼화사 대신 수륙사로 언급된 사찰은 五臺山의 上院寺였다. 1425년(세종 7) 화재로 인해 상원사를 수륙사의 지위에서

현암사는 비교적 지속적으로 수륙사로 유지되기는 하였으나, 관음굴은 세종대에 조종을 위한 수륙사로 인식되었기도 하였다.⁶⁰⁾

그러므로 15세기 중·후반에 이르면, 수륙사에서 수륙재를 설행하는 목적은 기본적으로 조종의 명복을 빌기 위한 것이 되었다. 새로 수륙사를 지정하는 경우에도 그 목적은 조종의 명복을 빌기 위한 것이었다. 15세기 중·후반의 『실록』 기사에서 수륙사의 수륙재 설행이 조종의 위한 것이라는 언급은 다수 확인된다. 16세기 초에 이르러 수륙사의 운영을 위해 국가가 지급한 토지인 水陸位田의 혁파가 논의될 때, 연산군과 중종이 이를 반대한 이유도 수륙사는 조종의 선왕·선후를 위한 사찰이라는 것이었다.⁶¹⁾

그런데 15세기에는 ‘국행 수륙사’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 이른바 ‘內行 水陸社’도 존재했다. 내행 수륙사에 관한 1466년(세조 12)의 『실록』 기사를 인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자료 5] 戶曹에서 福泉寺 僧 省愚의 狀告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本寺(북천사)의 전지[田] 2백 結 중에서 官司에 上納하는 稅米豆가 산출되는 전지는 軍資에 還屬시키고, 그 나머지 전지를 본사에서 收稅하는 일은 청컨대 장

혁파하면서, 세종은 상원사를 고려 왕실의 천도를 위한 수륙사로 언급하기도 하였다(『世宗實錄』 卷30, 7년 12월 19일). 그런데 1449년(세종 31) 津寬寺의 水陸社를 寧國寺로 옮기고자 논의하면서, 세종은 진관사가 고려 왕실의 천도를 위한 수륙사라고 언급하기도 하였다(『世宗實錄』 卷124, 31년 4월 21일). 이처럼 고려 왕실의 천도를 위한 수륙사라는 점은 수륙사 폐지의 명분으로 언급되기도 하였다. 이를 통해 볼 때에도 고려 왕실의 천도를 위한 수륙사는 점차 중요성이 퇴색되어 갔던 것으로 보인다.

60) 『世宗實錄』 卷115, 29년 2월 13일.

61) 『燕山君日記』 卷60, 11년 11월 6일, “且諸寺刹位田收稅及水陸所需雜物 竝革罷 …… 傳曰 爲先王先后寺刹 則不可遽革”. 『中宗實錄』 卷1, 중종 1년 10월 25일, “傳曰 前革除水陸寺陵寢寺內願堂位田還給”.

고에 의거하여 磨勘하여서 計除하되, 內行水陸社의 例로써 세미두를 전부 收納하는 일은 본사가 國行水陸社가 아니므로 청컨대 들어주지 마소서.”라고 하니, 傳敎하기를, “세미두를 모두 그 사찰에 속하게 하라.”라고 하였다.⁶²⁾

위 기사는 세조가 1464년(세조 10) 복천사에 하사한 사사전의 收稅에 대한 것으로,⁶³⁾ 戶曹에서 이를 세조에게 아뢰는 때 국행 수륙사와 내행 수륙사를 거론하였다. 호조는 복천사가 내행 수륙사라는 이유로 전세를 전부 수납하고자 하는 것에 반대하였는데, 호조가 반대한 명분은 복천사가 국행 수륙사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위 기사를 통해 수륙사의 성격과 운영에 관해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당시 수륙사는 국행 수륙사와 내행 수륙사로 구분되었다는 점, 국행 수륙사는 국가 재정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는 점, 복천사는 사사전이 지급된 사찰이나 국행 수륙사는 아니었다는 점 등이다. 그런데, 세조는 호조의 건의에 따르지 않고, 세미두를 모두 복천사에 속하도록 하였는데, 이러한 조치로 인해 사실상 국행 수륙사와 내행 수륙사의 구분이 모호하게 되거나, 복천사가 국행 수륙사의 위상을 가지게 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 보인다.

용어를 통해 확인되듯, 기본적으로 ‘국행 수륙사’는 국가가 수륙재를 실행하기 위해 지정한 사찰이며, ‘내행 수륙사’는 왕실이 수륙재를 실행하기 위해 지정한 사찰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논한 바와 같이 15세기 중·후반 수륙사의 수륙재 실행 목적은 조종의 명복을 빌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그 실행의 주체가 국가인가, 왕실인가에 따라 국행 수륙사와 내행 수

62) 『世祖實錄』 卷39, 12년 9월 11일, “戶曹據福泉寺僧省愚狀告啓 本寺田二百結 內 諸司上納稅米豆所出田 還屬軍資 其餘田本寺收稅事 請依狀告 磨勘計除 其以內行水陸社例 稅米豆專收事 則本寺非國行水陸社也 請勿聽 傳曰 并稅米豆 屬其寺”.

63) 『世祖實錄』 卷32, 10년 2월 28일.

륙사로 구분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국행 수륙사와 내행 수륙사는 수륙재를 실행할 때 국왕이 조정의 신료를 奉香使臣으로 파견하였는가, 그렇지 않았는가에 따라 구분할 수도 있고, 해당 수륙사가 국가의 재정으로 운영되었는가, 왕실의 私財로 운영되었는가에 따라 구분할 수도 있어 보인다.

사실 국행 수륙사에는 수륙사 운영과 수륙재 실행을 위해 ‘수륙위전’이 별도로 지급되었다. 앞의 <표 5>를 통해 1424년 승정체제 개혁으로 36개 사찰에 국가가 지급한 토지를 살펴보면, 관음굴과 진관사에는 사사전 이외에도 수륙위전 100결을 각각 별도로 지급하였다. 이 수륙위전 100결은 국행 수륙사인 관음굴과 진관사가 수륙사를 운영하고 수륙재를 실행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급한 토지인 것이다. 이 수륙위전은 『실록』, 『經國大典』, 『大典續錄』 등에서 ‘國行水陸田’, ‘國行水陸諸寺田’ 등으로도 지칭되었는데, 용어를 통해 보듯 국행 수륙사의 운영과 수륙재의 실행을 위해 국가가 지급한 토지였다.⁶⁴⁾ 그러므로 국행 수륙사는 기본적으로 수륙위전과 같은 국가의 재정으로 운영된 수륙사인 반면, 내행 수륙사는 왕실의 사재로 운영된 수륙사라고 할 수 있을 듯하다.

진관사는 대표적인 국행 수륙사로 세종대와 문종대에 그 경내의 수륙사가 개수되었고, 연산군대에 이르기까지 수륙재 실행이 지속되었다.⁶⁵⁾ 관음굴도 대표적인 국행 수륙사인데 1477년(성종 8) 재해로 붕괴되어 그 대신 靈通寺를 수륙사로 삼았다.⁶⁶⁾ 송광사는 1424년(세종 6) 10월 승정체제 소속 사찰로 지정될 때 정종이 증창한 수륙사라고 하였는데,⁶⁷⁾ 이후

64) 한편 寺社田은 『實錄』, 『大典續錄』 등에서 ‘寺社位田’, ‘居僧位田’, ‘僧人位田’ 등으로도 지칭되었는데, 이는 승정체제 소속 사찰의 운영과 그 사찰 승도의 공양을 위해 국가가 지급한 토지라고 할 수 있다.

65) 『燕山君日記』 卷48, 9년 1월 27일.

66) 『成宗實錄』 卷81, 8년 6월 7일, 30일.

67) 『世宗實錄』 卷26, 6년 10월 25일.

수륙재 관련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 1456년(세조 2)에 사헌부에서는 開菴寺에 材瓦를 지급하고, 龍門寺에 매년 봄, 가을 食鹽을 지급하는 것을 비판하면서, 수륙사를 추가로 설치하는[增置] 것은 불가하다고 하였다.⁶⁸⁾ 이 1456년의 기사를 통해 볼 때, 당시 수륙사가 추가로 설치되기도 하였고, 수륙사에 토지가 아닌 재화를 지급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1463년(세조 9)에는 莊義寺에 水陸舍가 건립되었는데,⁶⁹⁾ 장의사, 진관사 등의 수륙재는 연산군대에 이르기까지 고위 관료[秩高朝官]를 파견하여 설행되었다.⁷⁰⁾ 1503년(연산군 9)에는 당시 수륙재를 설행하는 사찰로 경상도 현암사, 전라도 雙峰寺, 황해도 貝葉寺 등이 거론되었는데, 이때 연산군은 이 사찰들에 조정의 신료[朝官]를 봉향사신으로 파견하는 것을 폐지하였다.⁷¹⁾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볼 때, 15세기 중·후반에 수륙사는 다른 사찰로 교체되기도, 새로운 사찰을 지정하기도 하였다. 특히 15세기 후반에 이르러 개암사, 용문사, 장의사, 영통사, 쌍봉사, 패엽사 등이 수륙사로 거론되었는데, 『실록』에서 거론된 이 사찰들은 대체로 국행 수륙사인 것으로 보인다. 『실록』은 기본적으로 국왕과 관료가 국정 운영을 논의한 내용을 기록한 자료라는 점, 이 사찰들이 기존의 국행 수륙사인 진관사, 현암사 등과 함께 거론되었다는 점, 국왕이 조정의 신료를 봉향사신으로 파견했다는 점, 조정의 신료가 재화 지급을 비판한 것은 이를 국가 재정으로 지급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통해 볼 때 그러하다. 그렇다면 15세기 후반에 이르러, 15세기 전반에 비해 국행 수륙사가 증가했다고 볼 수 있을 듯하다.

68) 『世祖實錄』 卷5, 2년 9월 7일.

69) 『世祖實錄』 卷30, 9년 6월 7일.

70) 『燕山君日記』 卷48, 9년 1월 27일.

71) 『燕山君日記』 卷48, 9년 1월 28일.

이처럼 국행 수륙사의 지정이 증가하기 시작한 것은 대체로 15세기 후반, 세조대 무렵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의 1456년 개암사, 용문사 사례를 통해 보듯 실제로 세조대에 신료는 수륙사 지정의 증가를 우려하고 있었다. 앞서 살펴본 [자료 5]의 1466년 복천사 사례를 통해 보듯 세조대에 사실상 국행 수륙사와 내행 수륙사의 구분이 모호하게 되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그리고 앞서 승정체제의 운용과 관련하여 논했듯, 세조대는 승정체제 소속 사찰과 사사전이 다소 증가하기 시작한 시기이기도 하였으며, 복천사는 새로 사사전이 지급된 사찰 중의 하나였다. 1424년 개혁 당시에도 수륙위전은 따로 지급되기도 하였는데,, 승정체제 운용과 수륙사 운영의 상호관계에 대한 고찰도 필요해 보인다. 그러므로 15세기 후반에 국가나 왕실이 새로운 사찰을 수륙사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은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통해 볼 때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2. 15세기 중·후반 무위사의 중창과 수륙사 지정

『新增東國輿地勝覽』에 따르면 강진 무위사는 ‘수륙사’가 되었다. 무위사가 수륙사가 되었다는 데 대한 유일한 문헌 기록인 『여지승람』의 康津縣 佛宇 조의 무위사에 대한 기술 내용의 전문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자료 6] 無爲寺 : 月出山에 있다. 開運 3년(946)에 僧 道誥이 창건하였다. 세월이 오래돼 퇴락하여 근래에[今] 重營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水陸社로 삼았다.⁷²⁾

72) 『新增東國輿地勝覽』 卷37, 全羅道 康津縣 佛宇, “無爲寺 在月出山 開運三年 僧道誥所創 歲久頽毀 今重營 因爲水陸社”.

『여지승람』에 따르면, 무위사는 고려 초기에 道詵이 창건한 사찰인데, 세월이 오래돼 퇴락하여 근래에 증창하였고, 이를 계기로 수륙사로 삼았다고 하였다. 위 내용은 1530년(중종 25) 『신증동국여지승람』이 편찬되면서 ‘新增’된 것이 아니므로, 『동국여지승람』이 처음 편찬된 1481년(성종 12)에 기술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현전하는 『동국여지승람』의 판본을 확인해 보면, 위 인용문과 그 내용이 완전히 동일하다.⁷³⁾ 그렇다면 위 내용은 1481년에 기술된 것이 분명하며, 무위사는 1481년과 가까운 시점에 증창되었고, 이를 계기로 수륙사가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논했듯 15세기에 수륙사는 국가나 왕실이 조종의 명복을 빌기 위해 지정한 사찰이었다. 15세기에 수륙사에 대한 기록은 대부분 『실록』에서 확인된다. 고위 관료의 文集인 권근의 『陽村集』에 「진관사수륙사조성기」가 수록된 것, 그밖에는 『여지승람』, 『세종실록지리지』 등과 같은 官撰 地理志에 기술된 것이 확인될 뿐이다.

『여지승람』에는 수륙사나 수륙재 관련 기술이 한성부의 진관사, 거창군의 현암사, 강진현의 무위사 3곳에서 확인된다. 진관사는 「진관사수륙사조성기」 전문이 수록되었고,⁷⁴⁾ 현암사는 1395년 태조가 고려 왕씨를 위해 전지 1백 결을 지급하니 매년 2월과 10월에 內香을 내려 수륙재를 설행한다고 하였다.⁷⁵⁾ 앞서 편찬된 『세종실록지리지』의 경우, 수륙사 관련 기술이 양주도호부의 진관사와 거창현의 현암사 2곳에서 확인된다. 진관사는 국행수륙사로 선종에 소속되며 전지가 250결 지급되었다고 하였고,⁷⁶⁾ 현암사는 교종에 소속하여 전지 150결이 지급되었고 태조가

73) 『東國輿地勝覽』(癸丑字本, 교토대 가와이문고 河合文庫/卜/18c) 卷37, 全羅道 康津縣 佛宇.

74) 『新增東國輿地勝覽』 卷3, 漢城府.

75) 『新增東國輿地勝覽』 卷31, 慶尙道 居昌郡, “洪武乙亥 我太祖爲前朝王氏 施田百五十結 每年二月十月 降內香 行水陸齋”.

76) 『世宗實錄』 卷148, 地理志 京畿 楊州都護府, “以國行水陸社屬禪宗 給田二百

명하여 수륙사로 삼으니 매년 봄, 가을로 향을 내려 재를 설행한다고 하였다.⁷⁷⁾

이처럼 15세기에 수륙사에 대한 기록은 『실록』, 『여지승람』과 같은 관찬 기록, 고위 관료의 문집 등에서만 확인된다.⁷⁸⁾ 무위사와 함께 『세종실록지리지』와 『여지승람』에 수륙사로 기술된 진관사와 현암사는 모두 15세기의 대표적인 국행 수륙사였다. 무위사의 경우, 국가가 사사전이나 수륙위전을 지급한 사실, 국왕이 봉향사신을 파견한 사실 등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국행 수륙사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관찬 지리지인 『여지승람』에 ‘수륙사로 삼았다[爲水陸社]’라고 기술된 점, 당시 ‘수륙사’라는 용어가 국행 수륙사와 내행 수륙사를 지칭할 때만 사용된 점, 앞서 논했듯 15세기 후반에 국행 수륙사와 내행 수륙사의 구분이 모호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통해 볼 때, 무위사가 국가나 왕실이 조종의 명복을 빌기 위해 지정한 수륙사였음은 틀림없어 보인다.

한편 『여지승람』에 따르면 무위사는 중창을 계기로 수륙사로 지정되었다고 하였는데, 실제로 1481년 무렵인 15세기 중·후반에 무위사를 중창, 개수한 사실들이 확인된다. 주지하다시피 무위사 극락보전은 1430년(세종 12) 孝寧大君이 참여하여 조영되었는데, 이 사실은 1982년 해체 수리 당시 종도리에서 발견된 墨書銘의 해석에 따른 것이다.⁷⁹⁾ 이 극락보전의 아미타여래삼존벽화는 1476년(성종 7) 조성된 것으로, 그 畫記에 따르면 許順, 前 牙山縣監 姜耆, 康津郡夫人 趙氏 등 100여 명이 시주로

五十結”.

77) 『世宗實錄』卷150, 地理志 慶尙道 居昌縣, “屬教宗 給田一百五十結 我太祖命爲水陸社 每年春秋 降香設齋”.

78) 權近의 『陽村集』에 수록된 「津寬寺水陸社造成記」도 권근이 태조의 명에 따라 찬술한 것이라는 점에서 일종의 관찬 기록이라고 볼 수 있다.

79) 극락전의 종도리 장혀에 기재된 묵서명의 가운데 줄에 “宣德五年五月二十日 指諭孝寧省眞信明……”라고 기재되어 있다.

참여하였다. 이 벽화를 그린 畫師는 大禪師 海連, 大禪師 善義 등으로, 이들은 당시 승정체제 운용 하에서 국가로부터 ‘대선사’라는 法階(僧階)를 수여 받은 僧人이었다.⁸⁰⁾ 극락보전에 봉안된 아미타여래삼존상의 경우 조성 시기가 명확하지는 않으나, 대체로 장흥 寶林寺 삼층석탑의 北塔誌 명문에 의거하여 1478년(성종 9) 조성된 것으로 이해된다.⁸¹⁾ 근래에 극락보전 단집 우측 상부에서 발견된 묵서명에서는 1526년(중종 21)에 丹青을 했다는 기록이 발견되었는데, 이를 근거로 극락보전의 단청은 1430년, 1476년경, 1526년에 조성된 것으로 이해된다.⁸²⁾

이처럼 무위사 극락보전은 단일 건축물 안에서 전각, 벽화, 단청 등의 편년 기록이 파악되는 희귀한 사례인데, 대체로 1430년에 전각이 신축되어 1476년경 개수된 것으로 보인다. 물론 극락보전이라는 한 건축물의 신축과 개수를 무위사의 중창과 동일시할 수는 없지만, 대체로 1430년경과 1476년경에 무위사를 중창하는 활동이 이루어졌음은 분명한 것이다. 그렇다면 『여지승람』이 편찬된 1481년과 가까운 시점의 중창은 1476년경의 중창일 수밖에 없어 보인다. 『여지승람』 편찬보다 약 50년이나 앞서는 1430년경의 중창을 ‘근래에 중창하였다[今重營]’라고 기술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현전 기록을 통해 볼 때 무위사는 1476년경의 중창을 계기로 수륙사로 지정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로

80) 15세기에는 국가적인 건축, 토목 공사에 공로가 있는 僧人에게 大禪師, 禪師 등의 法階를 수여하기도 하였다(신광희, 「강진 무위사 ‘아미타여래삼존 벽화’의 화승과 화풍 검토」, 13~14쪽). 하지만 15세기에 국가가 국가적 공사의 수행을 위해 僧徒를 동원할 때, 약 한 달 간의 赴役의 대가로 度牒을 발급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며, 이 도첩을 발급 받으면 僧의 지위로 평생 國役에서 면제될 수 있었다. 대선사, 선사 등의 법계는 일종의 官品이므로, 국가적 공사에 상대적으로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경우 발급되기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

81) 김광희, 「무위사 극락보전 아미타여래삼존상 연구」, 163쪽.

82) 이수예, 「강진 무위사 극락전 단청의 조성연대에 대하여」, 58쪽.

서는 1476년경 무위사 중창의 규모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다.

『여지승람』에 따르면, 무위사를 근래에 중창한 이유는 ‘세월이 오래돼 퇴락하였기[歲久頽毀]’ 때문이었다. 물론 무위사는 유서 깊은 고찰이었으나, 일반적으로 사찰이 퇴락하는 것은 경제적 기반의 약화, 거처 승도 수의 감소 등으로 인한 것이었다.⁸³⁾ 앞서 논했듯 무위사는 1406년의 승정체제 개혁으로 승정체제 소속 사찰에서 지정 해제되었으나, 1407년에 승정체제 소속 사찰로 다시 지정되었을 때 국가로부터 명산대찰로 인식되었다. 그러므로 무위사는 1406년의 개혁으로 지정 해제되었을 때까지는 국가적인 지원과 관리를 받는 사찰이었으며, 1407년부터 1412년까지 읍내 자복사를 대체하여 승정체제 소속 사찰로 지정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1406년 개혁 이전에 국가가 무위사에 지급한 사사전 결수를 알 수 없고, 무위사의 사적 경제 기반의 규모도 알 수 없기 때문에, 1406년과 1424년의 승정체제 개혁이 무위사의 운영에 미친 영향이 어느 정도였는지도 파악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무위사가 퇴락한 원인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승정체제 개혁에 따른 경제 기반의 약화, 거처 승도 수의 감소가 원인이었을 가능성을 상정해 볼 수 있다.

무위사의 역사를 찬술한 『無爲寺事蹟』에서는 15세기의 무위사 관련 기록이 2건 확인된다. 『무위사사적』은 무위사 주지 克峯이 1739년(영조 15) 정리한 사적을 바탕으로 梵海 覺岸(1820~1896)이 찬술한 것으로, 창건 이래 18세기 전반에 이르는 무위사의 역사를 서술하였다. 18세기 이후에 찬술된 일반적인 사찰사적류와 마찬가지로, 각 시기별 중창 사실을 차례로 서술하여 해당 사찰의 유구한 역사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서술되었

83) 사찰이 ‘망폐’하는 주요 원인은 전란, 화재 등이지만, ‘퇴락’하는 주요 원인은 경제 기반의 약화, 거처 승도 수의 감소 등이라고 할 수 있다.

다. 이에 사찰사적류의 고려시대 이전 서술은 신빙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무위사사적』도 고려시대 이전의 서술은 그대로 신빙하기 어려워 보인다. 사찰사적류의 조선전기 서술은 소략한 경우가 많은데, 이는 조선 전기에는 조선후기에 비해 사찰의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 활발하지 않았고, 임진왜란으로 인해 사찰의 문헌이 상당히 소실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런데 무위사의 경우 임진왜란으로 큰 피해를 당하지 않은 사찰이었다. 『무위사사적』에 따르면, 무위사는 왜군이 사찰을 범하지 않아 왜란 이후 月南寺와 釋王寺 사이에서 홀로 보존되었다고 하였다.⁸⁴⁾ 이에 무위사는 기존의 소장 문헌을 보존할 수 있었고, 『무위사사적』에 왜란 이전인 1555년(명종 10) 太甘의 중창 사실도 구체적으로 기술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무위사사적』의 15세기 무위사 관련 기록은 신빙할 만하지 못한 자료로 치부하기 어렵다.

『무위사사적』에는 효령대군이 강진에 머물 때 무위사에서 복을 축원하는 원당[祝釐願堂]을 열었다고 하였다.⁸⁵⁾ 앞서 언급했듯 무위사 극락보전이 1430년 효령대군의 참여로 조영되었다는 것은, 1982년 극락보전의 해체 수리 당시 종도리에서 목서명이 발견된 이후에 알려졌다. 그런데 이미 조선후기에 찬술된 『무위사사적』에 효령대군의 불사에 대한 기록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무위사사적』의 15세기 관련 기록이 신빙할 만하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러나 효령대군이 개창한 ‘축희원당’이 구체적으로 어떤 목적에 따른, 어떤 위상의 것이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다만 당시 願堂의 용례, 원당 개창의 주체 등을 고려할 때, 이는 왕실 인사인 효령대군

84) 『全羅左道康津月出山無爲寺事蹟』, “明神宗萬曆二十年 宣祖二十五年壬辰癸巳 倭寇之亂 寺之諸僧 一心祈祝 軍不犯寺 超然獨存於月南釋王兩寺之間 靈哉異矣”.

85) 『全羅左道康津月出山無爲寺事蹟』(影印本, 동국대 중앙도서관 B 218.61 무67), “且孝寧大君駐駛於康津之時 開祝釐願堂”.

이 주도하여 왕실의 사재로 운영한 원당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수륙사와 비교해 보자면, 대군의 원당은 국가나 왕실이 선왕·선후의 명복을 빌기 위해 지정한 국행 수륙사와 내행 수륙사보다는 그 위상이 낮은 것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효령대군의 전각 신축과 원당 개창은 1430년경 무위사의 운영이나 위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무위사사적』에는 세조가 하사한 「親筆御書」와 「御筆結卜三十結除役」 2軸이 언급되었다.⁸⁶⁾ 『무위사사적』에 기록된 이 두 문서의 이름만으로는 그 내용과 성격を 정확히 알기는 어렵다. 그런데 두 문서 중에 「어필결복삼십결제역」은 현전하고 있어서,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康津無爲寺 減役教旨」라는 명칭으로 2021년에 보물로 지정된 이 문서는, 1457년(세조 3) 8월 10일 국왕 세조가 監司와 首領에게 무위사의 雜役을 減除하도록 명하면서 발급한 教旨이다.⁸⁷⁾ 이 문서의 내용이 잡역을 면제[除役]하도록 한 것이라는 점, 이 문서의 표지에 ‘御筆’이라는 墨書가 확인된다는 점 등을 통해 볼 때, 이 「강진 무위사 감역교지」가 『무위사사적』에 언급된 「어필결복삼십결제역」이라고 할 수 있다. 「어필결복삼십결제역」은 1457년 세조가 전라 관찰사와 강진 현감에게 무위사의 잡역을 면제하도록 명을 내린 문서인 것이다.

세조는 1457년에 寺社는 貢賦 이외의 雜役을 일체 면제하는 등의 조치를 禮曹에 傳旨하였다.⁸⁸⁾ 이에 실제로 사찰에 교지가 발급되었는데, 그중 강진 무위사, 능성 쌍봉사, 천안 廣德寺, 예천 龍門寺 등에 발급된 4건이 현전하고 있는 것이다. 이중 강진 무위사, 능성 쌍봉사, 천안 광덕

86) 『全羅左道康津月出山無爲寺事蹟』, “又世祖大王親筆御書御筆結卜三十結除役二軸”.

87) 「강진 무위사 감역교지」, 국가문화유산포털(문화재청, <https://www.heritage.go.kr>); 두산백과(<https://www.doopedia.co.kr/>). 이 문서는 조선전기 이래 무위사에 소장되어 전하였을 것인데, 현재는 진안 금당사에 소장되어 있다.

88) 『世祖實錄』 卷7, 3년 3월 23일, “寺社 貢賦外雜役一除”.

사의 문서는 1457년 8월 1일에 발급되었고, 예천 용문사의 문서는 1457년 8월 14일 발급되었다. 당시 이 문서가 전국 대부분의 사찰에 발급된 것인지, 특정 주요 사찰에 발급된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 사찰의 잡역을 면제하는 조치를 하교하면서, 특정 주요 사찰에 교지를 발급하였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인다. 위 4곳의 사찰 중에 쌍봉사의 경우는, 앞서 언급했듯 봉향사신을 파견하여 수륙재를 설행하는 국행 수륙사였다. 그리고 『무위사사적』에 언급된 세조의 「친필어서」는 현전하지 않아 어떤 내용의 문서였는지 알 수 없지만, 무위사에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세조의 재위 기간(1455~1468년), 그리고 앞서 논했듯 성종의 재위 기간(1469~1494년)에도 승정체제 소속 사찰이 추가 지정되고 사사전이 추가 지급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1476년경의 무위사 증창은 국가나 왕실의 일정한 지원 하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없지 않아 보인다. 증창을 계기로 무위사를 수륙사로 삼았다는 『여지승람』 기사에 문맥을 고려할 때, 무위사를 수륙사로 지정한 주체인 국가나 왕실이 곧 무위사를 증창한 주체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15세기 후반 무위사의 수륙사 지정은, 승정체제 운용의 지속 하에 국가나 왕실의 수륙사 지정이 증가한 시기에 이루어진 것이었다.

IV. 맺음말

이 논문에서는 15세기 승정체제 개혁과 운용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15세기 무위사의 국가적 위상, 국가와 사찰의 상호관계에 대해 논해 보았다. 그 논의의 과정에서 1406년과 1424년 승정체제 개혁, 자복

사, 수륙사 등에 대한 기존의 이해를 일부 수정·보완하기도 하였다. 주요 논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무위사는 고려초기 이래로 승정체제에 소속된 ‘지정 사찰’이라는 국가적 위상을 대체로 유지해 왔으나, 1406년과 1424년의 승정체제 개혁으로 인해 ‘일반 사찰’이 되었다. 이에 무위사는 주지 임명, 사사전 지급 등을 통해 국가가 지원하고 관리하던 사찰에서, 국가의 지원과 관리를 받지 않는 사찰이 되었다. 그 자체적인 경제 기반의 유무나 확보에 따라 유지될 수도, 퇴락할 수도, 망폐할 수도 있는 일반 사찰이 된 것이다.

둘째, 무위사는 1406년 승정체제 개혁에 대한 1407년의 후속 조치에 따라 읍외의 ‘명산대찰’로서 읍내의 ‘자복사’를 대체하게 되었는데, 이 조치는 1412년 철회되었다. 1406년의 승정체제 개혁은 지방 군읍의 위계를 따른 승정체제의 대대적인 개편이 다소 무리하게 시도됨으로 인해 성공적이지 못했고, 이에 ‘읍내 자복사’의 혁거 여부가 계속 논란이 되었다. 1406년 개혁의 이러한 실패가 사실상 1424년 개혁의 배경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에 1424년의 승정체제 개혁은 주요 ‘명산대찰’에 사사전을 분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셋째, 15세기에 ‘수륙사’는 국가나 왕실이 조종, 곧 선왕·선후들의 명복을 빌기 위해 지정한 사찰이었다. 15세기 후반에 국가나 왕실의 수륙사 지정은 증가하였고, ‘국행 수륙사’와 ‘내행 수륙사’의 구분이 모호하게 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무위사는 1476년경의 중창을 계기로 수륙사로 지정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중창도 국가나 왕실의 일정한 지원 하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처럼 15세기 후반 무위사의 수륙사 지정은, 승정체제 운용의 지속 하에 국가나 왕실의 수륙사 지정이 증가한 시기에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러므로 15세기 개별 사찰의 연구는 승정체제, 자복사, 수륙사 등의 국가 제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15세기 승정

체체의 연구는 개별 사찰의 구체적인 사례 검토를 통해 보완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2022.12.01. 투고 / 2022.12.10. 심사완료 / 2022.12.16. 게재확정)

[Abstract]

The Administrative Status of Muwisa in Gangjin in the 15th Century

Son, Seong-pil

Based on the understanding of the Seungjeong system, this paper examined the administrative status of Muwisa Temple in the 15th century. The main conten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Muwisa Temple has been a temple belonging to the Seungjeong system since the early Goryeo Dynasty, but it became a general temple due to the reform of the Seungjeong system in 1406 and 1424. Second, the reform of the Seungjeong system in 1406 was not successful due to excessive attempts. This failure of the 1406 reform seems to have been the background of the 1424 reform. Third, in the 15th century, Suryuksa was a temple designated by the state or the royal family to pray for the repose of the ancestors. In the late 15th century, Muwisa Temple's designation as Suryuksa was made at a time when the designation of Suryuksa by the state or the royal family increased.

Therefore, research on individual temples in the 15th century needs to be conducted based on an understanding of the state system, and research on Seungjeong system in the 15th century needs to be supplemented through specific research on individual temples.

□ Keyword

Muvisa Temple in Gangjin, Seungjeong System, Official Temple, General Temple, Jaboksa, Suryuksa, Suryukjae

[참고문헌]

1. 원천자료

『東國輿地勝覽』(癸丑字本, 교토대 가와이문고 河合文庫/卜/18c)

『全羅左道康津月出山無爲寺事蹟』(影印本, 동국대 중앙도서관 B 218.61 무67)

2. 자료DB

문화유산연구지식포털(국립문화재연구원, <https://portal.nrich.go.kr>)

조선왕조실록(국사편찬위원회, <https://sillok.history.go.kr>)

한국고전종합DB(한국고전번역원, <https://db.itkc.or.kr>)

3. 자료집·보고서

국립박물관 편, 『無爲寺極樂殿修理工事報告書』, 문교부, 1958.

문화재청 편, 『無爲寺極樂殿實測調査』, 문화재청, 2004.

사찰문화재보존연구소 편, 『무위사 극락전 : 단청모사보고서』, 사찰문화재보존연구소, 2012.

조동원 편, 『韓國金石文大系 1: 全羅南北道』, 원광대학교 출판국, 1979.

4. 저서

김용태, 『조선불교사상사: 유교의 시대를 가로지른 불교적 사유의 지평』,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21.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HK연구단 편, 『테마 한국불교 2』, 동국대학교출판부, 2014.

5. 논문

강호선, 「조선 태조 4년 國行水陸齋 실행과 그 의미」, 『한국문화』 62, 2013.

- 강호선, 「조선전기 국가의례 정비와 ‘국행’수륙재의 변화」, 『한국학연구』 44, 2017.
- 김광희, 「무위사 극락보전 아미타여래삼존상 연구」, 『불교미술사학』 18, 2014.
- 김선기, 「15~16세기 조선의 지정 사찰운영과 賦稅」, 『조선시대사학보』 100, 2022.
- 김용태, 「조선전기 역불정책의 전개와 사원경제의 변화상」, 『조선시대사학보』 58, 2011.
- 박정미, 「조선시대 佛敎式 喪·祭禮의 실행양상 : 왕실의 국행불교상례와 사족의 봉제사사암을 중심으로」, 숙명여대 역사문화학과 박사논문, 2015.
- 배종민, 「강진 무위사 극락전과 후불벽화의 조성배경」, 『고문화』 58, 2001.
- 손성필, 「寺刹의 혁거, 철훼, 망폐 : 조선 태종·세종대 승정체제 개혁에 대한 오해」, 『진단학보』 132, 2019.
- 손성필, 「조선 태종·세종대 ‘혁거’ 사찰의 존립과 망폐 : 1406년과 1424년 승정체제(僧政體制) 개혁의 이해 방향과 관련하여」, 『한국사연구』 186, 2019.
- 신광희, 「강진 무위사 ‘아미타여래삼존 벽화’의 화승과 화풍 검토」, 『미술사논단』 52, 2021.
- 양혜원, 「15세기 승과(僧科) 연구」, 『한국사상사학』 62, 2019.
- 이경화, 「무위사 극락보전 벽화의 원형과 변모」, 『불교학연구』 15, 2006.
- 이경화, 「無爲寺 極樂寶殿 白衣觀音」, 『불교미술사학』 5, 2007.
- 이수예, 「강진 무위사 극락전 단청의 조성연대에 대하여」, 『강좌미술사』 43, 2014.
- 이승희, 「無爲寺 極樂寶殿 白衣觀音圖와 觀音禮懺」, 『동악미술사학』 10, 2009.
- 장충식·정우택, 「無爲寺壁畫白衣觀音考 : 畫記와 墨書偈讚을 중심으로」, 『정토학연구』 4, 2001.
- 최선일, 「康津 無爲寺 極樂寶殿 阿彌陀三尊壁畫」, 『경주문화연구』 5, 2002.
- 최연식, 「高麗時代 高僧의 僧碑와 門徒」, 『한국중세사연구』 35, 2013.
- 최연식, 「고려 왕조의 개창을 도운 남도의 두 ‘선각(先覺)’스님 : 선각대사 형미와 선각국사 도선」, 『(2020 찾아가는 박물관 강좌) 남도, 남도인, 남도문화』, 목포대학교박물관, 2020.
- 한기문, 「고려시대 資福寺의 성립과 존재 양상」, 『민족문화논총』 49, 2011.

